

DDA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의 주요 이슈와 전망



오 영 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目 次 ■

1. 서언
2.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관련 합의
내용과 향후 협상전망
3. 한국 및 세계 각국의 관세율 수준
4. 공산품 관세인하협상의 주요 이슈와
전망
5. 공산품 관세인하방식의 개념과 전망
6. 결론(주류부문 영향에의 시사)

1. 서언

작년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 회의에서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가 협상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향후 2004년 말까지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03년 3월까지 협상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각국의 제안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공산품 관세인하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의 협상전망, 한국 및 세계 각국의 관세율 수준, 협상의 주요 이슈와 전망, 공산품 관세인하의 개념과 전망, 그리고 주류 부문에의 시사를 간략히 살펴 본다.

2. DDA 비농산물 시장 접근 관련 합의내용과 향후 협상전망

(1) 비농산물 시장접근 관련 합의 내용

지난 2001년 11월 9일에서부터 14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도하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등 협상의 기설정 의제 뿐만이 아니라 비농산물 시장 접근 분야가 협상의 범위(DDA: Doha Development Agenda)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

공산품(및 입수산물)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 혹은 제거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개시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공산품의 관세인하는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총 8차례의 WTO 다자간 협상 라운드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어 왔고, 그 결과 선진국 및 개도국의 관세수준이 크게 낮아지고 양허품목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온 바 있다. 그러나, DDA 협상의제에 공산품의 관세장벽(및 비관세장벽) 완화 이슈가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은 이 분야의 합의가 상대적으로 용이해 협상의 성과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정치적 의도외에도 선진국 및 개도국의 관세수준이 아직 높거나 혹은 왜곡된 관세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세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의 증진 여지가 상당히 남아 있다는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하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비농산물 시장접근 관련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도하각료선언문 제 16항). 첫째, 관세(첨두관세, 고관세 및 경사관세 구조 포함)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단, 협상방식은 사후에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협상대상 상품 범위는 포괄적이어야 하고 사전적 제외가 불가하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원칙적으로 관세인하 협상은 모든 공산품(및 입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산업발전이 낙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보호를 통해 해당국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이를 인정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상품 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비관세장벽의 감축 및 폐지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하였다.

(2) 향후의 협상전망

DDA 관세인하협상은 도하각료선언문 채택 이후 2004년말까지 3년여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도하각료선언 및 최근 논의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장접근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1단계(2002. 3~2003. 3)에서는 2002년 10월까지 각국이 제안한 협상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제안서에 대하여 2003년 3월까지 합의 도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실제 양허협상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협상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며, 특히 단기간의 협상기간을 고려할 때 이 단계의 협상에 협상력을 집중할 필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제2단계(2003. 3~제5차 멕시코 각료회의)에서 각국은 각료회의시 중간평가를 준비하면서 향후 협상에 대비하여 협상전략을 개발하고 실제 협상의 효과 분석 등 주로 연구작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3단계(제5차 각료회의~2004. 9)에서는 관세인하의 폭, 주요쟁점(고관세, 경사관세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접근방식(공식적용)에 의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동시에 분야별 무세화 및 특별 관심품목의 관세인하를 위한 복수국가 협상(Request/Offer 방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2004. 9~2004. 12)에서는 각국이 관세양허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의 표출이나 조정절차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대체적인 일정에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최근 인도 등 일부 개도국들은 협상의 준비기간 확보 등의 이유로 2003년 3월까지 예정된 협상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표1〉 한국의 산업부문별 단순평균관세율 현황

단위 : %

HS부	품목명	실행세율(2001)		양허세율(2001)		양허세율(최종연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5	광물성제품	3.7	2.1	5.5	3.8	5.5	3.8
06	화학공업제품	8.6	24.5	10.9	4.9	6.0	2.8
07	플라스틱, 고무, 그 제품	7.6	1.4	12.2	3.2	8.5	3.3
08	원피, 가죽, 모피, 그 제품	7.8	4.4	12.9	5.1	12.1	5.6
09	목재	5.7	2.5	9.3	4	9.3	4.0
10	펄프, 종이	5.9	3	6.9	4.2	0.0	0.0
11	섬유, 섬유제품	9.8	4	22	9	18.8	9.8
12	피복류	10.2	2.5	13	0	13.0	0.0
13	석, 플라스틱	7.9	0.7	13.6	2.9	13.9	2.9
14	귀금속	5.3	2.6	8.1	4.4	8.1	4.4
15	비금속	6.6	1.9	9.8	5	8.1	6.6
16	기계, 전기기기	6	3.2	9.1	5.8	8.7	6.2
17	차량, 항공기, 선박	5.8	3.5	8.1	5.4	8.0	5.5
18	각종기기	6.6	2.9	9.2	4.8	9.1	5.0
19	무기, 총포탄	4.2	4.1	7.4	7.4	7.4	7.4
20	잡품	7.3	2.3	11.2	4.3	8.9	6.6
21	예술품 등	0	0	0	0	0.0	0.0
	소계	7.4	12.3	11.7	7.3	9.4	7.3
	전체산업	13.7	53.9	14	11.1	11.5	10.8

제안서 합의기간을 몇 개월 더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년도 DDA 협상회의 일정에 다소간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DDA 관세인하 협상에서는 UR협상의 경우에 비해 특히 개도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UR협상에서는 관련 개도국들이 WTO 가입조건으로 양허품목의 확대와 관세인하 조건 등을 대폭 수용해야 했지만, 금번 DDA 협상에서는 대다수의 개도국들이 WTO 회원자격으로 참여함에 따라 양허품목의 확대나 관세인하 등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한국 및 세계 각국의 관세율 수준

(1) 한국의 관세율 수준

한국의 관세율 수준을 실행관세율(2001년), 양허관세율(2001년), 그리고 UR이행기간에 따른 최종연도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각각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공산품(HS 5부~21부 기준)의 단순평균 실행관세율(2001년)은 7.4%이고, 농산물을 포함한 전체산업의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은 13.7%이다. 산업 부문별로는, 피복류(10.2%), 섬유 및 섬유제품(9.8%), 그리고 화학공업제품(8.6%)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둘째, 한국 공산품의 단순평균 양허관세율(2001년 기준)은 11.7%이고, 농산물을 포함한 전체산업의 단순평균 양허관세율은 14%에 달하고 있다. 산업 부문별로는, 섬유 및 섬유제품(22%)의 양허관세율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 밖에 석, 플라스틱(13.6%), 플

라스틱, 고무, 그제품(12.2%), 그리고 원피, 가죽, 모피, 그제품(12.9%)의 양허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셋째, 한국 공산품의 최종년도 양허관세율의 단순평균은 9.4%이고, 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단순평균은 11.5%에 달하고 있다.

산업 부문별로는, 섬유 및 섬유제품(18.8%), 피복류(13%), 석, 플라스틱(13.6%), 그리고 원피, 가죽, 모피, 그제품(12.1%)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공산품 전체적으로 볼 때, 2001년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든 최종년도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든 양허관세율이 실행관세율보다 높다. 이것은 DDA 협상에서 협상기준 관세율로서 양허관세율이 채택될 경우 관세인하에 따른 국내 산업에의 영향의 자동적인 흡수가능성이 그만큼 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들 산업으로는 양허관세율이 실행관세율보다 월등히 높은 섬유 및 섬유제품, 석, 플라스틱, 그리고 원피, 가죽, 모피, 그 제품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기준 관세율을 실행관세율로 할 것인가 혹은 양허관세율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관세인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수입증대 가능성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가능성의 저울질을 통한 판단하에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세계 각국의 관세율 수준

관세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자간 협상에서 그동안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어 온 양허관세율을 중심으로 각국의 공산품의 관세보호 수준을 살펴 본다. 선진국들의 양허관세율 수준은 스위스 1.8%에서 호주 14.2%에 이르기까지 국별

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쿼드 국가의 양허관세율은 일본의 3.5%에서 캐나다 5.2% 이르기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동구 국가들의 양허관세율은 체코의 4.3%와 루마니아 30.1%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개도국들의 공산품 평균 양허관세율은 홍콩, 마카오의 0%에서 인도의 6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개도국의 절반 가량의 국가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대략 25~40% 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양허관세율 수준을 산업 부문별로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 두개의 산업 부문 즉 섬유 및 의류 부문과 가죽, 고무, 신발, 여행용 재화 부문에서 양허관세율 수준이 두드러지게 높고, 또 수송기계의 관세율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EU와 노르웨이의 경우 가죽, 고무, 신발, 여행용 재화의 관세율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수산물의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

동구권 국가와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특히 수송 기계 부문의 관세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섬유 및 의류, 가죽, 고무, 신발, 여행용 재화, 수송기계, 그리고 수산물의 평균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남미 국가들은 균등 양허관세율 체제의 특성상 산업전반에서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업별 격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대체로 섬유 및 의류 부문, 가죽, 고무, 신발, 여행용 재화 부문, 그리고 수송기계 부문 등에서 양허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2〉 국별·산업별단순 평균 양허관세율

구분	나무, 펄프, 종이 가구	섬유, 의류	가죽, 고무, 신발, 여행 용 제화	금속	화학	수송 기계	비전기 기계	전기 기계	음료 품, 귀 금속	기타 제조 업	수산 물
북미											
캐나다	1.3	12.4	7.6	2.8	4.5	6.8	3.6	5.2	3.1	4.2	1.8
미국	0.6	8.9	8.4	1.8	3.7	2.7	1.2	2.1	3.3	3.0	2.2
라틴아메리카											
아르헨티나	29.4	35.0	35.0	34.4	23.5	34.6	34.9	34.7	32.8	33.7	34.5
브라질	27.7	34.9	34.7	33.4	22.7	33.6	32.6	31.9	33.5	33.5	33.4
칠레	25.0	25.0	25.0	25.0	25.0	24.9	25.0	25.0	24.9	25.0	25.0
콜롬비아	35.0	36.8	35.2	35.0	35.0	35.8	35.0	35.0	35.1	35.0	47.7
코스타리카	44.2	45.1	45.9	44.5	43.5	49.6	44.2	43.3	44.6	44.7	46.3
살바도르	35.3	38.6	40.8	35.0	37.7	35.8	32.6	34.6	37.7	38.2	45.0
자마이카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6
멕시코	34.0	35.0	34.8	34.7	35.2	35.8	35.0	34.1	34.4	34.6	35.0
페루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베네수엘라	33.7	34.9	34.5	33.6	34.1	33.6	33.2	33.9	34.1	33.4	33.8
서유럽											
유럽공동체	0.7	7.9	4.8	1.6	4.8	4.7	1.8	3.3	2.4	2.7	11.8
아이슬란드	11.9	9.7	13.8	6.8	2.8	17.1	7.0	19.4	11.5	21.9	3.6
노르웨이	0.4	8.5	2.2	1.1	3.0	3.3	2.7	2.7	0.7	2.2	7.3
스위스	2.1	4.6	2.0	1.1	1.5	2.2	0.6	0.7	1.5	1.3	0.5
터키	40.5	80.3	79.9	30.4	29.0	25.8	23.7	26.6	39.4	43.3	26.2
동유럽											
체코	5.5	6.2	3.8	3.8	4.0	6.2	3.8	4.2	3.4	3.6	0.2
헝가리	5.4	8.1	6.7	4.9	5.5	15.9	8.4	9.5	5.0	7.8	17.1
폴란드	8.0	13.1	11.9	9.9	8.7	16.1	8.9	9.7	6.9	11.6	16.3
루마니아	31.4	32.9	30.7	31.7	30.6	32.1	29.5	27.3	32.2	29.3	28.1
슬로바키아	5.5	6.2	3.8	3.8	4.0	6.2	3.8	4.2	3.4	3.6	0.2
아시아											
호주	7.0	28.8	17.5	4.5	9.2	15.1	9.1	13.3	7.0	7.0	0.8
홍콩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인도	56.4	87.8	67.8	58.3	44.1	53.9	36.2	44.8	47.2	72.4	68.6
인도네시아	39.6	39.9	39.6	36.4	37.4	58.5	36.6	38.7	39.2	36.9	40.0
일본	1.2	6.8	15.7	0.9	2.4	0.0	0.0	0.2	1.0	1.1	6.2
한국	4.8	18.2	16.7	7.7	6.7	24.6	11.1	16.1	10.4	11.4	19.1
마카오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말레이시아	19.8	20.7	19.1	14.2	15.4	29.8	10.9	14.1	14.7	12.6	14.5
뉴질랜드	4.5	21.9	19.1	11.2	6.1	17.0	15.1	16.1	7.6	11.7	2.8
필리핀	31.8	27.7	32.7	22.9	22.6	26.1	22.0	26.2	28.5	29.5	29.4
싱가포르	3.1	7.8	3.4	3.2	5.0	4.4	4.3	4.9	1.2	1.2	9.8
스리랑카	32.6	45.0	43.0	16.6	15.8	18.3	12.8	20.4	26.2	27.1	49.2
태국	21.3	29.2	34.1	25.6	29.3	38.5	23.4	30.5	25.9	29.5	12.5

구분	나무, 펄프, 종이, 가구	섬유, 의류	가죽, 고무, 신발, 여행 용 재화	금속	화학	수송 기계	비전기 기계	전기 기계	음료, 귀금속	기타 제조업	수산물
아프리카											
카메룬	21.8	22.8	21.2	15.9	11.6	14.9	12.2	16.8	18.5	22.9	23.8
차드	21.8	22.7	21.2	15.9	11.6	20.2	12.2	16.8	18.5	22.9	23.8
카본	15.5	15.1	15.0	15.2	15.2	15.0	15.2	15.0	16.1	18.5	15.0
세네갈	17.6	16.1	16.3	15.1	15.2	14.1	6.7	7.2	15.1	15.0	12.9
남아프리카	9.2	27.7	23.1	14.1	13.9	23.3	12.0	17.4	11.5	14.8	22.5
튀니지	34.2	56.3	36.1	25.6	26.5	25.5	25.2	29.1	28.9	32.5	41.2
짐바브웨	12.6	21.4	13.1	9.1	5.5	10.1	6.3	12.3	7.6	15.5	3.1

〈자료:WTO, 2001.〉

4. 공산품 관세인하협상의 주요 이슈와 전망

DDA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의 주요 이슈로는 양허범위의 확대 문제, 협상기준관세의 채택과 관세인하의 폭, 관세인하방식의 채택문제, 왜곡된 관세율구조(침투관세, 경사관세율, 미소관세 등)의 완화 혹은 제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주요 이슈의 개념과 협상전망을 간략히 살펴 본다.

(1) 양허범위의 확대

양허관세율이란 자국의 관세율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 즉 자국이 설정할 수 있는 최고관세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국가는 양허관세율내에서는 자국내 관세율의 조정이 가능하지만 양허관세율 이상으로 자국 관세율을 인상할 수 없다. 그리고 양허관세율을 설정해 놓는 품목을 양허품목이라 말한다. 따라서 양허범위의 확대 문제는 양허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문제이다.

UR 협상시 양허품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양허품목 비중은 국가에 따라 10% 미만에서부터 100% 양허까지 다양한 분

포를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양허품목의 비중은 95%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양허품목의 비중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대부분의 국가의 양허비중은 100%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양허관세율은 25~50% 까지의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국가별로 균등 양허관세율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허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DDA 협상에서는 특히 양허비중이 낮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양허비중의 확대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공산품(HS 5부~21부 기준)의 비양허품목수는 766개로서 전체 tariff lines의 8%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고, 따라서 양허품목 비중은 92%에 달하고 있다.

비양허 품목의 비중을 산업부문별로 보면, 원피, 가죽, 모피, 그제품(22.1%), 목재(25.1%), 석, 플라스틱(17.7%), 기계, 전기기기(15.4%), 그리고 차량, 항공기, 선박(20.9%) 등의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2) 협상기준 관세의 채택과 관세인하의 폭

관세협상에 있어 협상의 기준을 실행관세로 할 것인가 또는 양허관세로 할 것인지를 문제도 DDA 협상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UR협상을 포함하여 기존의 관세협상은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협상기준 관세의 채택여부가 이슈가 되는 것은 국가에 따라서는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간에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간에 차이가 적고 유사하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일반적으로 양허관세율이 실행관세율에 비해 매우 높다.

이처럼 개도국들의 경우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자발적 관세인하 혹은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온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UR협상의 경우처럼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협상을 벌이되, 양허관세율이 없는 경우에만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실행관세율을 기준세율로 주장하여 협상을 진행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양허관세율을 기준세율로 채택하거나 양자간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허관세율을 협상의 기준으로 할 경우, 양허관세율이 실행관세율보다 월등히 높은 개도국들의 관세인하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며, 또 양허관세율 범위내에서의 실행관세율의 잦은 변경은 WTO가 추구하는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실행관세율을 협상의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적으로 관세인하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자발적 관세인하노력에 대한 인정(credit)을 해 줄 수 없어 특히 개도국들의 자발적 무역자유화노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경우도 양허관세율이 실행관세율보다 다소 더 높은 편이다. 현재 한국의 평균양허관세율은 11.4%이고, 평균실행관세율은 7.2%이다. 따라서 양허관세율을 협상기준으로 하는 경우 관세인하 영향의 자동 흡수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세협상시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인 반면, 개도국들의 전반적인 고관세를 낮추는 것이 한국수출에 유리성을 가지고 온다는 공세적 입장에 선다면 실행관세율을 협상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표 3〉 주요국의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간 격차

단위:년, %

국가	미국	EU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아르헨	멕시코
이행기간	2000	200	2000	2005	2005	2000	2005	2005
평균양허세율	3.9	4.1	3.5	11.7	26.1	14.2	31	34.8
평균실행세율	4.3 (1999)	5.0 (1998)	4.2 (1998)	7.9 (1998)	9.5 (1998)	5.8 (1998)	13.7 (1998)	12.6 (1998)
격차(양허세율- 실행세율)	-0.3	-0.9	-0.6	3.8	16.6	8.3	17.3	22.3

자료:WTO.

주: 이행기간은 양허관세율의 이행기간이고, 평균실행세율의 연도는 해당연도 기준 실행관세율의 의미함.

도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양허관세율을 협상의 기준으로 하든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든 관세율을 어느 정도 낮출 것인가도 주요 이슈중의 하나다. 관세인하의 폭은 아래에서 살펴 보게 될 관세인하방식과 협상력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고관세, 첩두관세, 경사관세구조의 완화 혹은 제거

고관세란 관세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우를 지칭하며, 주로 관세장벽이 높은 개도국들에 해당된다. DDA 협상에서는 무엇보다도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전반적인 고관세를 낮출 것을 요구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첩두관세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기준으로는 15% 이상의 관세율을 말하고, 국내적 기준으로는 자국내 평균관세율의 3배 이상이 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평균관세율 수준이 낮은 선진국(미국, 일본, EU)은 국제기준 첩두관세의 비중보다는 국내기준 첩두관세의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반면,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평균관세율 수준이 높은 개도국들의 경우 국내기준 첩두관세의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국제기준 첩두관세의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첩두관세의 정의에 있어 이해관계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개도국에서 국제기준 첩두관세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은 전반적인 고관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국내기준 첩두관세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은 첩두관세의 정의에 있어 국제기준의 정의를 선호하는 즉 첩두관세문제를 고관세문제의 일환으로 정의하기를 선호하고 또 그러한 주장을 펼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국내기준 첩두관세의 비중(1.4%)보다 국제기준 첩두관세의 비중(19.1%)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국제기준 첩두관세의 비중을 산업별로 보면, 우선 개도국들의 경우 전반적인 고관세 구조의 특성상 모든 산업군에서 높은 수준의 첩두관세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평균관세율 수준이 낮은 선진국의 경우 국제기준 첩두관세의 비중이 높은 산업군은 대체로 섬유, 의류, 가죽, 고무, 신발, 여행용 재화, 그리고 수송기계 부문이다. 이들 부문은 일반적으로 개도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선진국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즉 비교열위를 갖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경사관세율 구조는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증가하는 관세율구조를 말한다. 경사관세구조는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 해당되지만, 특히 선진국의 경사율관세구조는 개도국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가공도가 낮은 원재료 부문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개도국들의 경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가공도가 높은 중간재나 완제품 부문으로 생산구조를 전환시켜 가야 하는데 선진국의 경사관세구조는 이러한 개도국들의 산업발전 단계 이행을 저해하거나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첩두관세와 경사관세 문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하각료회의에서 완화하거나 제거하기로 합의를 본 바 있어, 향후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분야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균등관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첩두관세, 경사관세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세밀한 관세율구조 분석을 통해 이의 영향 가능성도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공산품 관세인하방식의 개념과 전망

전체적으로 보면 금번 DDA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에서는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해 양허품목의 확대와 고관세의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대해 첨두 관세(섬유, 의류, 신발, 수송기계 등) 및 관세율 경사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관계, 더 나아가 각국의 상이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결국 어떠한 관세인하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각국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 관세인하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관세인하방식은 협상의 초기단계에서 논의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관세인하방식은 크게 보아 공식에 의한 인하방식(Formula based Approach), 국별·품목별 협상방식(Request/Offer Approach), 그리고 분야별 협상방식(Sectoral Approach)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공식에 의한 관세인하방식으로는 일괄선형 방식, 스위스 방식, 그리고 EU 방식 등이 있다. 일괄선형방식은 모든 품목의 관세를 동일한 비율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관세율 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품목별로 차이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고관세 품목은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단점이 있다. 스위스 방식(Swiss Formula)은 고관세품목의 인하율을 크게 하기 위한 일종의 조화방식으로 지난 UR에서 채택된 바 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낮은 관세의 인하폭은 낮게 하면서 고관세품목의 관세인하율은 높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국의 이해관계로 공식도출 합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1999년 EU가 제안

한 관세조화방식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력의 차이를 감안하여 차별적인 관세인하를 일정한 공식에 따라 추진하고, 미소관세를 철폐하자는 방식이다. 즉 공산품에 대한 각국의 관세율중 3개 대역(18~20%, 10~12%, 3~5%)을 초과하는 관세율을 대역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3% 미만의 미소관세는 제거하여 관세율구조를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또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최빈개도국의 평균관세율은 OECD의 8배, 기타 WTO 회원국들은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관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국별·품목별 협상방식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세인하의 가장 기본적 형식으로서 수입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Request List를 제출하면 수입국은 양허가능한 품목의 Offer List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협상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분야별 협상방식은 특정 품목 혹은 산업에 국한하여 관세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무세화협상이나 ITA(정보기술협정)가 이에 해당한다.

우루과이 협상에서는 공식적용방식(스위스 방식)이 채택된 가운데, 국별·품목별 협상과 부문별 협상방식이 병행되었다. 공식적용방식이 채택되어도 특정 분야 관세율을 소폭 감축하는 대신 다른 분야에서 보상하거나, 개별 국가 또는 품목에 대한 예외인정은 있어 왔다. 최근, EU, 일본 등은 일괄선형방식 또는 관세조화 등 공식적용방식을 중심으로 관세인하협상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공식적용 외에도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분야별 협상 혹은 Request/Offer 방식의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금번, DDA 협상에서도 지난 우루과이 협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용방식이 채택되는 가운데

〈표 4〉 한국 주류 부문의 관세율 구조

단위:년, %

HS 번호	품목명	실행관세율(2001)	양허관세율(2001)	최종연도 양허관세율
2203	맥주	30	51	30
2204	포도주	18.8	52.4	30
2205	베르뭇과 유사 포도주	15	51	30
2206	기타의 발효주	15	51	30
2207	변성하지 아니 한 에틸알콜	57.2	33.8	36.4
2208	변성하지 아니 한 에틸알콜	20.1	51.8	30.0

분야별 협상과 Request/Offer방식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6. 결론 (주류 부문 영향에의 시사)

한국 주류 부문의 관세율은 2001년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15~57%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2001년 양허관세율은 대체로 5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UR이행기간에 따른 최종연도 양허관세율은 약 3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주류부문은 공산품이라기 보다는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농산물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3%이고, 일부 고관세율 부문을 제외한 평균 관세율은 22~2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주류부문의 관세율 수준은 공산품의

관세율 수준보다는 월등히 높기는 하지만 농산물중에서는 대체로 중간 정도의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DDA협상에서는 농산물의 경우도 공산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률의 관세율 감축방식이 적용되는 가운데 Request/Offer 방식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는 U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R/O 방식에 의한 협상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류 업계로서는 관세율의 일정률 감축 방식 뿐만 아니라 특히 R/O 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편으로는 각국의 협상안 제시에 주목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세율 인하에 대비하여 한국 주류 부문의 경쟁력강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